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문화대학교

수신 전임교원
(경유)

제목 202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 안내

1. 관련 : 산학협력단-3(2026.03.03.) 「202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 계획(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지원대상 : 2026.03.01.~ 2027.02.28. 사이에 발생한 연구실적물
 ※ 2025학년도 실적을 2026학년도에 신청할 경우 지원되지 않음
 - 나. 접수마감 : 2027. 02. 12.(금)
 - 다. 지원계획 : 붙임자료 참조
 - 라. 신청서식 : 교직원 게시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자료실-연구게시판

- 붙임 1. 202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 계획 1부.
 2. 202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 신청서 양식 1부. 끝.

산학협력단장

직인생략

담당 *김서민* 팀장 *이근숙* 부단장 *김희영* 단장 *이승남*

협조자

시행 산학협력단 - 69 (2026. 3. 11.) 접수

우 31065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 <http://www.bscu.ac.kr>

전화 041-550-2075 전승 041-550-2393 / ksm0508@bscu.ac.kr 공개여부 (공개)

202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계획(전임교원)

2026. 3.

구 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급금액	비 고		
교내연구	과제지원	정책연구과제	400만원	과제당		
학술 연구 지원	학술논문	국 내	전 학부	120만원(전문학술지) [연구재단 등재(후보)]	400만원 이내 (단, 일반학술지는 2회, 공연·전시는 5회 이내)	공동의 경우 : 1/n
		국 내	예체능 학부	<별표 1> 참조		
			국 제	250만원(SCI, SSCI, A&HCI) 200만원(SCI-E, Scopus) 100만원(기타 외국저널)		
	저서 및 번역서 ^{3), 4)} [초판에 한함]	120만원(국외) 100만원(국내) 80만원(번역서)	(1년 1회)	공동의 경우 : 1/n (1년 1회)		
학술 활동 지원	학술회의 발표 ⁵⁾	국내학술회의 발표	20만원(전국규모)	주발표자 (1년 2회)		
		국제학술회의 발표 ⁶⁾	80만원(미주, 유럽) 50만원(아시아, 기타)			
	학술대회 교내개최 ⁷⁾	70만원(연구재단등재후보) 40만원(연구소, 기타)	(1년 1회)			
	학술대회 참가(국내) ⁸⁾	5만원	(1년 2회)			

<전체 관련 사항>

- 예산 적용은 당해 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나, 당해 학년도 신청 건 중 예산이 부족할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음
-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물(논문, 결과보고서, 저서 학술대회 발표 등)은 지원하지 않음
- 허위자료 제출 시 교수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복무의무위반 감점사항 적용함
- 공연 실적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쇄된 프로그램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포스터, 팸플릿 등) / 전시 실적의 경우 전시회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전시회 도록 제출

<부분 관련 사항>

- 1) 일반학술전문지는 전문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학술지로서 **전국규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지**를 말함
- 2) 학술논문의 학회등재(후보)지, 일반학술전문지의 구분은 논문게재 당시의 한국연구재단 학회지 분류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함(예 : 게재당시 일반학술지였으나 추후에 등재후보지로 변경된 경우 일반학술지로 인정)
- 3) 저서의 경우 4×6배판(182mm×257mm) 200페이지 이상, 신국판(152mm×225mm) 250페이지 이상 저서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 페이지 미달 시 8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 관련 창작물(예 : 시집, 소설 등) **편저**는 저서발간기준에 적용하지 않음. ※ 4×6배판 150페이지 이하, 신국판 180페이지 이하는 지원불가(<별표 2> 용어 및 세부해설 참조)
- 4) 저서의 경우 6인 이상 공저의 경우 10만원 지급
- 5) 학술대회 발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참가하여 발표한 경우에만 인정함
 -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된 학회가 주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학내 연구소, 학부, 기타 소규모학회 주최, 포스터발표 및 교내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동일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와 학술대회 발표 중 1개만 지원하며, 동일한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대회 참가건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6) 국제학술대회는 외국에서 개최한 학술대회로 3개국 이상의 국적자가 발표자로 참여하고, 발표 논문이 외국어로 게재된 경우를 말하며, 그 외는 국내학술대회로 인정함. 포스터 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 7) 학술대회 교내개최의 경우 개최 15일전까지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하에 행사를 개최한 경우에만 지원함
 - 단, 전국규모학회의 학술대회만 인정하며 연구소, 학부, 지역학회, 기타 소규모학술대회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8)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학술대회 등록 영수증(기타 증빙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9) 기타 자세한 용어에 대한 해설은 <별표2> 용어 및 세부해설 참조

<별표 1>

(단위 : 만원)

구분	평가지표			지원금액	
음악 활동 공통	발표	국제	저명 (독창회, 독주회, 개인 작곡발표, 컴퓨터음악 창작발표, 오페라 주역, 지휘 (교향악단, 실내악단, 오페라, 오라토리오, 합창의 전체 프로그램))	200	
			협연	150	
		일반	독창회, 독주회, 개인 작곡발표, 컴퓨터음악 창작발표, 오페라 주역, 지휘 (교향악단, 실내악단, 오페라, 오라토리오, 합창의 전체 프로그램)	150	
			오케스트라와 협연 1인	100	
			오케스트라와 협연 2인	80	
		국내	일반	독창회, 독주회, 개인 작곡발표, 컴퓨터음악 창작발표, 오페라 주역, 지휘 (교향악단, 실내악단, 오페라, 오라토리오, 국악관현악단, 합창의 전체 프로그램)	100
				오케스트라와 협연 1인	70
				오케스트라와 협연 2인	50
			연주회의 공동지휘, 부분 지휘	30	
		음반제작	Studio 녹음의 음반출판 - 독주, 독창, 신작품 출판 - Joint 음반 출판	70	
작곡	발표	오케스트라/오라토리오(관현악반주편성), 오페라 신작품 발표	100		
		오케스트라(현악/관악 반주편성) 신작품 발표	70		
		실내악(3인 이상), 합창, 오라토리오(피아노반주편성) 신작품 발표	70		
		실내악(2인 이내), 독주악기작품 신작품 발표	50		
		가곡 신작품 발표	30		
성악	발표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		
	출연	오페라 Part별 조역 출연(단역 출연)	50		
협연	오라토리오의 솔리스트 출연	50			
	오라토리오의 듀엣 이상	30			
관현악	발표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		
		1 Stage 연주	30		
컴퓨터 음악	발표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 및 연극, 무용 등의 무대공연물 제작 발표	장편 신작물 150 단편 신작물 100		
		작곡, 연주, 복합공연물 발표회 음반 기획 및 제작(레코딩, 마스터링, 믹싱, 시퀀싱)	5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		
피아노	발표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		
	반주	전체 프로그램	50		
		2인 공동 반주	30		
1 Stage 반주	20				
실용 음악	발표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		
디자인 영상	국제(국내) 인정된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200(100)	
	국제(국내) 인정된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100(70)	
	국제(국내)미술대전, 공예대전, 산업디자인전 추천/초대작가 작품			100(70)	
	국제(국내)에서 인정된 사단법인단체의 초대/회원전 작품			70(50)	
	국제(국내)기타출품(회원전, 기획전, 소단체 추천/초대작가)			50(30)	
공 통	기타(위 항목 이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0	

- 예·체능계열의 교원이 독주회, 독창회, 오페라, 작곡발표회 등 규정에서 나열된 내용을 국내·외 전문연주홀 또는 공개발표장에서 공연한 것에 인정함
- 국제저명발표 : 국가(정부) 또는 주요문화단체가 주관하고, 각국의 대표 공연장(카네기홀, 링컨센터 등)에서 공연한 경우(600석 이상)
- 국제일반발표 : 일반자치체 또는 문화단체가 주관하고 3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한 경우
- 해외 연주 시 해외연주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동영상(비디오 및 DVD) 자료 제출 및 해외 전시 시 해외 전시회 주관 부서에서 발행한 전시회 도록 제출
- 국내일반발표 : 광역시 이상 3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한 경우(천안, 아산 인정함)
- 국제적으로 인정 : G7 국가의 전문 갤러리에서 전시(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연·전시의 경우 국내에서 개최하였을 경우 국내로 인정함
- 공연 전시의 경우 주최가 국내외의 관련 저명 단체여야 하며, 전국단위 전문연주홀, 대학의 연주홀, 시단위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함 (교내에서의 공연·전시도 인정함, 단 교회는 제외)
- 학생지도 성격의 공연(출연연주회, 졸업작품전 등의 지도), 종교행사, 보직관련 공연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전시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용어에 대한 해설은 <별표 2> 용어 및 세부해설 참조

<별표 2> 용어 및 세부해설

구분	항목	해설	확인방법	비고
학술지에 관한 해설	SCI	-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 SCI 논문 검색 사이트 (thomsonreuters.com) ※ 해당 저널이 검색되면 인정	공동은 1/n
	SSCI	- 사회과학 인용색인		
	A&HCI	- 예술 또는 인문학 인용색인		
	SCI-E	- 자연과학 인용색인		
	기타 외국저널	- 위의 색인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인정하는 저널(G7국가만 가능함)	- 국제적인 기관 인정여부 (심의위원회 결정)	
	전문학술지	- 전문학술지에 논문 또는 연구자료 등재(전국 규모)	- 한국연구재단 학회지 등재 (후보) 확인	
	일반학술지	- 일반학술지에 논문 또는 연구자료 등재(전국 규모)		
저서 발간 기준	기준	- 4×6배판(182mm×257mm), 200페이지 이상 : 전액지급 · 150~199페이지 : 80%지급(1~149페이지는 지원불가) - 신국판(152mm×225mm), 250페이지 이상 : 전액지급 · 180~249페이지 : 80%지급(1~179페이지 : 지원불가) - 공저 중 6명 이상 공동 집필 : 10만원 지급 ※ 공저인 경우 저서의 기준에 충족한 경우만 가능하며 전공 관련 창작물은 저서 발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예 : 시집, 소설 등)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표준 도서 번호(ISBN) 등재 확인(납본까지 완료할 경우 탑재됨)	공동은 1/n
국내·외 학술회의 및 대회	발표	- 본인이 발표자로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후보 포함)된 학술단체 및 학회에서 주관한 전국 규모의 회의 및 대회로 제한함 ※ 발표하는 회의 및 대회의 주최자가 등재된 학술단체 또는 학회의 지부에서 주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여부 확인 - 행사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전경 사진 및 본인 참여사진	대회 유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유치	- 본인이 발표자가 아니어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후보 포함)된 전국규모의 학술단체 및 학회에서 주관하는 회의 또는 대회 개최를 본교에 유치한 경우 ※ 유치한 행사가 등재된 학술단체 또는 학회의 지부에서 주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공연 및 전시	국내·외 (저명) 공연 및 발표	- 공연 및 발표 : 국가(정부) 또는 주요문화단체 주관하고 각국의 600석 이상 대표시설에서 공연 (예 : 컨벤션센터, 카네기홀, 링컨센터 등)	- 공연법에 의거한 전문 연주홀 등록여부 확인서 (시설현황) 제출	600석 이상
	국내·외 (일반) 공연 및 발표	- 국내·외 저명단체에서 광역시 이상에서 주관하고 300석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서 개최한 경우. 단, 천안, 아산시는 인정 - 모든 공연(독주회, 독창회, 오페라, 작곡발표회 등)은 전문연주홀에서 공연한 것만 인정하여 각 지자체에 등록된 공연시설 또는 전문 연주홀이어야 함 ※ 단, 행사의 특성상 야외 또는 노천시설에서 하는 경우 주최기관에 따라 인정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전문연주홀로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대학 포함]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인정)	- 공연법에 의거한 전문 연주홀 등록여부 확인서 (시설현황) 제출	300석 이상
	전시	- 국내 : 전국의 전문갤러리(지자체에 등록이 완료된 시설) - 국외 : G7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전문 갤러리에서 전시한 것만 인정 ※ 전문갤러리란 전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간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임. 이를 근거로 전시기록이 공개되어야 함.	- 전문갤러리 등재 확인 (박물관 및 미술관법 준용)	-

교내 연구비 지원 신청서(전임교원)

소 속 학 부		직급/직위		성 명	
구 분 (해당란에 ○표하세요)	학 술 활동지원	1. 국내 학술지 게재() 2. 국제 학술지 게재() 3. 저서 발간 - 국외() 국내() 4. 공연, 전시() (구분: / 평가지표: -) 5. 국내 학술회의 발표() 6. 국제 학술회의 발표() 7. 학술대회 교내개최() 8. 한국연구재단 신규프로젝트 신청서 제출()			
	교내 학술 연구지원	1. 국내 학술지 게재() 2. 국제 학술지 게재() 3. 저서 발간 - 국외() 국내() 4. 공연, 전시() (구분: / 평가지표: -)			
학술지·저서 발행기관 (학술회의명)			학술연구분야코드		
게재 학술지 및 저서(번역서)	논 문 제 목 (저서명)				
	호 수	()권 ()호, Vol.() No.()			
	게 재 범 위	쪽 ~ 쪽	발간년월	년 월 일	
	학술지 등급	한국연구재단 등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일반학술전문지() A&HCI(), SSCI(), SCI(), SCI-E(), Scopus(), 일반국제학술전문지()			
학술회의 발표 및 교내개최 (공연, 전시)	장 소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관 기 관				
	주 최 기 관				
	참 가 자 수	명	발표논문수	국내 : 편, 국외 : 편 (계: 편)	
	후 원 기 관				
	본 교 교 수 참가자 명단				
	논 문 제 목 (프로그램명)				
저자수(참여구분)		명 (주저자(), 부저자())			
지급의뢰계좌	은 행 명			지 점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제출서류 1. 학술활동지원의 경우 [별지 15호 서식] 제출 2. 교내 학술연구비의 경우 [별지 12호, 13호, 14호, 15호 서식] 제출 ※유의 : 해당 논문이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경우 신청 불가					
위와 같이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학협력단 작성	지원금액
	원

결 재	담당	팀장	부단장	단장

연구 계획 변경 신청서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위)		성명	
연구과제명						
구분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p>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26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연구책임자 : _____ (서명 또는 인)</p> <p>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p>						

	담당	팀장	부단장	단장
결 재				

연구 중간 보고서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위)		성명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공동연구원	소속			성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진행 상 황						
<p>위와 같이 연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26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연구책임자 : _____(서명 또는 인)</p> <p>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p>						

결 재	담당	팀장	부단장	단장

확 인 서

소 속	
성 명	
논문(저서)명	

본인은 상기 논문(저서)을 저술함에 있어 본교 연구윤리규칙에 의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